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한 연구: 미국 및 EU 제도를 중심으로

조영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A Study on Anti-Circumvention Rules: with Focus on the US' and the EU's Systems

Youngjeen Cho^a

^a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10 October 2022, Revised 29 October 2022, Accepted 30 October 2022

Abstract

Anti-circumvention rules were discussed profoundly during the Uruguay Round and the DDA negotiations, although WTO member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to introduce it to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However, as the cases of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increase, a number of countries have enacte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as part of their anti-dumping laws.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ti-circumvention rules from the perspective of WTO law. After overviewing the object and purpose of anti-dumping and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it examines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of the US, the EU, and India. Next, the study explores the possible WTO-inconsistent aspects of those regulations. Then, it discusses whether it would be preferable for countries not equipped with anti-circumvention regulations, such as Korea, to have one. Thereafter, this study proposes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nti-circumvention rules into its anti-dumping law.

Keywords: Anti-Circumvention, Anti-Dumping Agreement, Anti-Dumping Measures, Circumvention, Dumping, Trade Remedy, World Trade Organization

JEL Classifications: F13, K33

^a Youngjeen Cho, E-mail: ycho@ewha.ac.kr

I. 서론

수출자들이 자국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수입국 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제하여야 된다는 인식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존재하였다. 캐나다와 미국이 각각 1904년과 1916년에 덤핑 행위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국의 국내 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를 상쇄하도록 하는 반덤핑 제도를 도입한 이래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들도 국내법으로 반덤핑 제도를 구비하였다. 또한, 덤핑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행위가 개별 국가의 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제 거래 질서도 교란시킨다는 판단에 1947년에 채택된 다자무역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에 덤핑 행위에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제6조를 두었다.

반덤핑 제도가 구비되어 있으면 외국 수출자의 덤핑 행위가 있는 경우 국내 기업이 그 덤핑 행위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에 덤핑 조사를 신청하고, 정부는 조사를 통하여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덤핑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덤핑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국내 사업을 보호한다. 그런데 일부 수출자들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물품의 선적이나 생산 방법을 바꾸거나, 물품 자체를 사소하게 변경함으로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우회덤핑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하여 우회 운송하는 행위, 완성품 대신 부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거나, 부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여 그곳에서 조립된 완성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단순한 가공을 통하여 물품의 두께, 크기 또는 재료를 사소하게 바꾸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U와 미국은 이러한 우회덤핑을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회피함으로써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반덤핑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1987년, 1988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미국과 EU는 우회덤핑을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미 자국이 시행 중인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반덤핑 협정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자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반덤핑 조치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컸던 한국, 일본, 홍콩 등은 특정 상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EU의 제안에 반대하였다. Arthur Dunkel 당시 GATT 사무총장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 타협안을 (GATT 1992) 제시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않았고, 결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은 WTO 반덤핑 협정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대신 WTO 회원국들은 각료 결정으로 반덤핑 위원회에 이 문제를 위임하였고, 1997년 9월 반덤핑 위원회 산하에 우회덤핑에 대한 비공식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1997년 10월 29일 제1차 우회덤핑 작업반 회의가 개최된 이후 한동안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성과가 없었고, 2002년 이후에는 DDA 규범협상에서 논의되었으나 반덤핑 협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와 문안 작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협상의 기초가 되는 의장 초안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우회덤핑을 규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회원국도 상당수 있기는 하였으나, 이후 DDA 협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반덤핑 협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중단되었다.

다자무역협상을 통하여 WTO 반덤핑 협정에 우회덤핑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DDA 협상의 실패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미국과 EU처럼 국내법으로 우회덤핑을 규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미국, EU, 캐나다, 호주와 같이 전통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국가들뿐 아니라 중국처럼 DDA 협상에서는 우회덤핑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국가와 인도, 베트남, 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여 35개 이상의 국가들이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곽동철, 2017).

이렇듯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일부 선진국들은 기존의 제도를 재정비하여 정교하게 개선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DDA 협상에서 우회덤핑을 규제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WTO 설립 이후 WTO 회원국들 중 가장 많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덤핑 제도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컸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여 수출하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외 진출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WTO 반덤핑 협정에 우회덤핑을 규제하는 조항을 두어 다자적으로 규제하면 한국 기업의 수출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한국으로의 수출이 점차적으로 증대하면서 한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빈도도 증가하고 외국 기업이 우회덤핑 행위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며 한국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지자 한국 내에서도 우회덤핑 방지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곽동철, 2017; 정재호, 이민선, 양지영, 2014). 이전과 달라진 통상 환경에 따른 현실적인 필요성 외에도 다자규범의 제정과 국내법을 통한 제도화는 별개의 문제이니만큼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본 고는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과 EU가 규제하는 우회덤핑의 유형과 조사 절차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동 분석을 바탕으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만, 본 고의 연구 방법은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에 국한되며 우회덤핑 또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가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 분석을 비롯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II.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 미국과 EU법을 중심으로

1. 미국의 우회덤핑 유형 및 조사 절차

미국은 1988년 종합통상경쟁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을 통하여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제7편 제781조에 도입하였다. 이후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을 제정하면서 1988년에 도입된 조항에 따라 우회덤핑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결함을 시정하였다. 현재 미국은 1930년 관세법 제7편 제781조에 따라 우회덤핑을 규제하고 이 조항은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U.S.C.) 제19편 제1677j조(19 U.S.C. §1677j)에 편제되어 있다. 상무부는 상무부 규칙에 따라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데 이 규칙은 미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제19편 Part 351에 편제되어 있고, 이중 19 C.F.R 351.225가 우회덤핑에 적용된다. 1930년 관세법 제7편 제781조는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 및 반덤핑 조치 부과 후 개발된 물품 등 총 네 가지의 우회덤핑 유형을 규정한다.

1) 우회덤핑의 유형

(1)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 물품의 부품이나 요소를 미국으로 수출하여 미국 내에서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을 거쳐 완성함으로써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성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유형이다. 이 때,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의 부품

또는 요소에 대하여 기존 완성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품 또는 요소를 수출하여 완성품에 부과되는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품 또는 요소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품 또는 요소의 수입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완성품의 수입을 대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부품 또는 요소의 수입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완성품의 수입을 대체한다고 인정되어 반덤핑 관세를 부품 및 요소에도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수입된 부품 및 요소로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이 기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물품(완성품)과 동일한 부류 또는 동일한 한 종류의 물품이어야 된다.

둘째,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이 기존 반덤핑 관세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품 또는 요소로 조립 또는 완성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경미하여야 한다.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미국 내 투자 수준, 미국 내 연구 및 개발 수준, 미국 내 생산 공정의 본질, 미국 내 생산 설비의 규모,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가치가 물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모두 다섯 가지의 기준이 있다. 다섯 가지 기준은 우회덤핑에 대한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상무부는 이 중 어느 하나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조립 및 완성 공정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무부는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부품 또는 요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넷째, 반덤핑 관세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품 또는 요소의 가치가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전체 가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야 된다. 이 경우에도 상무부는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수입되는 부품 또는 요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입된 부품 또는 요소에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동 부품 및 요소가 전술한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립 또는 완성에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원자재의 구매를 포함한 교역 형태, 부품 또는 요소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와 미국 내 물품의 조립자 또는 완성자 사이의 특수 관계 존재 여부, 그리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 덤핑 조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부품 또는 요소의 미국 수입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5파운드를 초과하는 대형포장으로 수입되는 이탈리아산 파스타가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5파운드 이하 소형포장으로 수입되는 파스타에 부과되던 기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1996년 6월 14일 5파운드 또는 그 이하로 포장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탈리아산 건(乾)파스타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USDOC, 1996b; 1996c). 이후 Barilla S.r.L.(Barilla)가 생산한 파스타가 5파운드가 넘는 대용량으로 포장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대용량 파스타는 미국에서 5파운드 이하 소용량으로 재포장되어 판매되었다. 1997년 10월 23일 Barilla에 대하여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상무부는 12월 15일 조사를 개시하였다(USDOC, 1997a). 상무부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파스타가 부품 또는 요소에 해당하고, 미국으로 수입된 후 소용량으로 재포장 되는 과정은 사소한 조립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상무부는 Barilla가 생산하여 대용량으로 포장한 파스타를 수출하여 소용량으로 재포장하는 행위가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USDOC, 1998a; 1998b).

(2)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물품의 부품이나 요소를 제3국으로 수출하고 그 곳에서 조립 또는 완성하여 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 기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물품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인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

고,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품이나 요소를 제3국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조립 또는 완성하여 완성품의 원산지를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이루어진 제3국으로 변경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형이다. 이 때,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제3국산 물품에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완성된 물품이 아닌 물품의 부품이나 요소가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품이나 요소를 미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여 그 곳에서 조립 또는 완성하여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유형이다. 이 때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에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국으로부터의 완성품의 수입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물품 또는 부품이나 요소의 수입을 대체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3국으로부터의 완성품의 수입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물품 또는 부품이나 요소의 수입을 대체한다고 인정되어 반덤핑 관세를 제3국으로부터의 완성품에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하여 수입된 물품이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동일한 부류 또는 동일한 종류의 물품이어야 한다.

둘째, 부품이나 요소가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이면 미국으로 수입되기 전에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부품이나 요소를 사용하여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이어야 하고, 완성품인 물품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이면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의 부품이나 요소를 사용하여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이어야 한다.

셋째, 제3국에서의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경미하여야 한다. 조립 또는 완성 공정이 사소하거나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제3국 내 투자 수준, 제3국 내 연구 및 개발 수준, 제3국 내 생산 공정의 본질, 제3국 내 생산 설비의 규모, 그리고 제3국 내에서 이

루어진 공정의 가치가 물품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모두 다섯 가지의 기준이 있다. 다섯 가지 기준은 우회덤핑에 대한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상무부는 이 중 어느 하나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조립 및 완성 공정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무부는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요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넷째,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품 또는 요소의 가치가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전체 가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야 된다. 이 경우에도 상무부는 생산비용에 기초하여 부품 또는 요소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섯째, 해당 물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반덤핑 관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상무부가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에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구매를 포함한 교역 형태, 부품 또는 요소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와 제3국의 물품의 조립자 또는 완성자 사이의 특수 관계 존재 여부, 그리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 덤핑 조사 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부품 또는 요소의 제3국으로의 수출 증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한국산 컬러 TV에 대하여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무부는 1984년 4월 한국의 삼성전자, 럭키금성, 대우전자가 생산하는 한국산 컬러 TV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USDOC, 1984). 한국 기업들은 1991년 후반부터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을 중단하고 멕시코와 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CPT, PCB, TV kits 등 부품을 현지로 수출하여 조립한 다음 완성품인 컬러 TV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IBEW), International Union of Electronic, Electrical, Salaried, Machine & Furniture Workers(IUE-CWA) 및 Industrial Union Department(Union) 등 노동조합은 1995년 8월 11일 상무부에 삼성전자, LG전자(구(舊) 럭키금성), 대우전자가 반덤핑

관세를 우회한다고 주장하며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하였고, 상무부는 우회덤핑 조사를 시작하였다(USDOC, 1996a). 상무부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의 증거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상무부는 멕시코와 태국에서 수입되는 컬러 TV가 기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컬러 TV와 동일한 종류 또는 부류이고, 미국에 수입되기 전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인 한국의 부품이나 요소를 사용하여 조립 또는 완성되며, 멕시코와 태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및 완성 공정이 경미하고,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인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의 가치가 컬러 TV 전체 가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를 노동조합이 제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USDOC, 1996a). 다만, 조사신청자인 노동조합이 1997년 12월 19일 우회덤핑 조사의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를 종결하였기 때문에(USDOC, 1997b) 이 사건에 대한 상무부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판단은 없었다.

베트남산 냉연강관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가 중국산 냉연강관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역시 이 유형의 우회덤핑에 대한 것이다. 상무부는 2016년 7월 14일 일본산 및 중국산 냉연강관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USDOC 2016a). Steel Dynamics, Inc., California Steel Industries, Arcelo 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및 AK Steel Corporation 등 미국의 6개 철강 기업은 중국에서 수입한 열연강관 제품으로 베트남에서 냉연강관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행위가 중국산 냉연강관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9월 22일에 조사를 신청하였고, 상무부는 2016년 11월 17일 조사를 개시하였다(USDOC, 2016b). 상무부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냉연강관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인 중국산 냉연강관과 동일한 제품이고,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인 중국에서 생산한 열연강관을 부품으로 하여 제3국인 베트남에서 조립 또는 완성한 제품이라고 보았다. 또

한, 베트남에서 냉연강관을 생산하는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 및 연구와 개발 수준, 베트남에서의 생산 공정의 본질과 생산 설비의 규모,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가치가 냉연강관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여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가공 공정이 사소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상무부는 중국산 열연강관의 가치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냉연강관 가치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역 형태, 중국산 열연강관 생산자와 베트남 냉연강관 생산자 또는 수출자 간의 특수 관계 및 중국산 냉연강관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산 열연강관의 대(對)베트남 수출 증가와 베트남산 냉연강관의 대(對)미국 수출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트남산 냉연강관의 수입이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USDOC, 2017; 2018).

(3)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

덤핑 조사 중인 물품이나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물품과 동일 부류 또는 동일 종류의 물품의 형태 또는 외관에 사소한 변경을 가함으로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경우,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에 기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무부가 해당 물품을 조사 대상 혹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우회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반덤핑 조치 이후 개발된 물품

덤핑 조사가 개시된 이후 개발된 물품도 기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덤핑 조사 개시 후 개발된 물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새로 개발된 물품과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 간에 물리적 성질이 동일한지 여부, 양 물품의 최종 구매자의 기대가 동일한지 여부, 최종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 유통 경로가 동일한지 여부, 광고 및 진열방식이 유사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된다. 아울러, 상무부는 새로 개발된 물품이 덤핑 조사 청원서 또는 덤핑 조

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 상무부의 사전 통보에 명시된 물품과 관세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나 구매자가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새로 개발된 물품의 추가적인 기능이 주된 용도이고 추가 기능을 위한 비용이 전체 생산 비용의 상당한 비중 이상인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사 절차 개요

우회덤핑 조사는 상무부가 직권으로 개시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신청하면 개시되는데, 보통은 이해당사자인 국내 산업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한 이해당사자가 적절한 자료와 함께 우회덤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적시된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무부는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우회덤핑 조사신청서와 기존의 덤핑 조사,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물품이 기존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상무부는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만약 우회덤핑 조사신청서와 기존의 덤핑 조사, 상무부와 ITC의 결정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면,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하고 연방관보에 게재한다. 이후 이해당사자들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무부는 질문지를 송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다. 상무부는 예비 판정을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는데, 조사 대상이었던 물품이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제3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 또는 반덤핑 조치 이후 개발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상무부는 우회덤핑에 해당하고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해당 물품에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ITC에 이러한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덤핑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ITC는 피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데, 기존의 덤핑 관세를 우회덤핑에 해당하는 물품

에도 부과하는 경우 오히려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무부가 ITC에 통보하는 것이다. 보통 상무부는 우회덤핑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야 된다는 긍정 판정이 나오면 ITC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ITC는 상무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상무부는 협의에 응해야 된다. 상무부와 협의 후 해당 물품을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ITC는 상무부에 서면으로 이러한 권고를 전달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ITC의 권고를 고려하여 미국에서 조립 또는 완성된 물품에 사용되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 또는 원료,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가 아닌 제3국에 조립 또는 완성한 물품, 또는 반덤핑 조치 이후 개발된 물품에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한다. 다만, 전술한 네 가지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 중 사소한 변경을 가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할 때에는 ITC에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EU의 우회덤핑 유형 및 조사 절차

EU에서는 주로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EC 역내에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반덤핑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한 조립 공정만으로 완성품을 생산하여 역내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불만과 우려로 1980년대 중반에 우회덤핑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Vermulst 2010). 이에 1987년 6월 EC 이사회 규칙 제2423/88호(Council Regulation (EEC) of No. 2423/88 of 11 July 1988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or subsidiz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C)를 통하여 반덤핑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우회덤핑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우회덤핑 방지 조항은 EU 역내에서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적용되었고, 제3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EU로 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 상의 원산지과 관세품목 분류에 대한 규정

이 적용되었다. 이후 1994년 12월 이사회 규칙 제3283/94호에 의해 EU 역내 뿐 아니라 제3국에서 조립 및 완성하는 행위도 우회덤핑 방지 조항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이후 EU 반덤핑 규정은 이사회 규칙을 통하여 수차례 개정되었고 현재에는 이사회 규칙 제2016/1036호(Regulation (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protection against dumped or subsidized imports from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제13조에 따라 우회덤핑을 규제한다. 제13조 제1항은 제3국을 통한 우회 행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서 우회운송, 재포장, 제품의 사소한 변경과 같은 단순한 우회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인다(Vermulst, 2015). 제2항은 조립 과정을 수반하는 우회 행위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고, 일반 규정인 제1항은 제2항의 적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제3항은 우회덤핑의 조사에 관한 절차 조항이다.

1) 우회덤핑의 유형

(1) 제13조 제1항 일반 규정

제13조 제1항은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 행위가 존재하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종 물품 또는 그 부품이나 요소에 기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행, 공정 또는 작업으로 제3국과 EU 간의 교역 형태에 변화가 발생하고, 반덤핑 관세의 부과 이외에는 그러한 교역 형태의 변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가 가격과 수량 측면에서 훼손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설정된 기존의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우회 행위가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즉, 관행, 공정 또는 작업; 교역 형태의 변화;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타당성의 불충분; 기존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의 훼손; 덤핑의 증거 등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우회 행위가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우회 행위가 존재하고 해당 물품에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인 관행, 공정 또는 작업과 관련하여 동 조항은 해당 물품의 관세 항목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물품의 사소한 변경; 제3국을 통한 환적; 기존 반덤핑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받은 개인 수출자를 통하여 EU로 수출하기 위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국 내에서의 판매 형태와 판매망의 변경; 제2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EU 또는 제3국에서의 조립을 예시적으로 열거한다.

두 번째 요건은 제3국과 EU 간의 교역 형태의 변화이다. 교역 형태의 변화는 완제품 대신 부품의 수출을 통한 우회, 물품의 변경을 통한 우회,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한 우회 등이 있는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수입이 다른 물품의 수입으로 대체되어 감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교역 형태의 변화는 보통 덤핑 조사가 개시된 다음에 시작되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심화된다(Vermulst, 2015).

세 번째 요건은 관행, 공정 또는 작업으로 인한 교역 형태의 변화에 반덤핑 관세의 부과 이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정당성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즉, 특정 물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교역 형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없는 것이다.

네 번째 요건은 수입된 동종 물품이 가격 또는 수량 측면에서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를 훼손하였다는 증거이다. 제13조 제1항은 가격 “또는” 수량이라고 규정하나 실제 조사에서 집행위원회는 가격 측면과 수량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Vermulst, 2015).

다섯 번째 요건은 덤핑의 증거이다. 이전의 원 덤핑 조사에서 동종 또는 유사 물품에 대하여 산정된 정상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우회덤핑 조사에서의 수출 가격과 원 덤핑 조사에서의 정상 가격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으면 덤핑이 존재한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마카오로부터 수입되는 가죽 신발류가 제13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서 2006년부터 중국산 가죽 신발류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EU, 2006) 회피하는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EU, 2008).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가죽 신발류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마카오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며, 반덤핑 관세의 부과 이외에 이러한 교역 형태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사유와 경제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중국, 마카오, EU 간 교역 형태의 변화는 환적 및 공정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판단하며,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마카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EU, 2008).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인도산 스테인레스강 제품의 수입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U 방위위원회(Defence Committee)가 2017년 1월 3일 인도에서 수입되는 이음새 없는 스테인리스강 파이프와 튜브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하자 집행위원회는 2월 16일 조사를 개시하였다(EU 2017a). 집행위원회는 2010년 9월 30일 개시된 중국산 이음새 없는 스테인리스강 파이프와 튜브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 2011년 12월 21일 동 제품에 48.6%-71.8% 사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EU, 2011), 2016년 12월 10일 개시된 종료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를 계속하여 부과하기로 하였다. 2017년 2월 18일 개시된 우회덤핑 조사에서 집행위원회는 중국, 인도, EU 간 교역 형태의 변화와 관련하여 인도가 중국산 열연 파이프를 수입하여 냉연 파이프로 수출하는 형태의 교역은 2010년 중국산 물품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미 있었을 뿐 아니라 열연 파이프를 냉연 파이프로 만드는 공정은 중요한 공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국, 인도, EU 간 교역 형태의 변화에는 반덤핑 관세의 회피 이외에도 적절한 사유와 경제적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인도에서 수입되는 이음새 없는 스테인리스강 파이프와 튜브가 우회덤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2017년

11월 16일 조사를 종료하였다(EU, 2017b).

(2) 제13조 제2항 특별 규정

일반 규정인 제13조 제1항에 더하여 제2항은 조립 공정에 관련 특별 규정이다. 동 조항은 EU 역내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진 조립 공정이 아래 네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첫째, 조립 공정이 덤핑 조사 개시 직전이나 이후 시작되거나 상당히 증가하였고, 관련 부품이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어야 한다.

둘째,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부품의 가치가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총가치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조립 및 완성 공정에서 수입된 부품에 부가된 가치가 제작비의 25%를 초과하면 우회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셋째, 조립된 동종 물품의 가격 및/또는 수량 측면에서 기존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를 훼손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전의 원 덤핑 조사에서 동종 또는 유사 물품에 대하여 산정된 정상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알루미늄 호일이 2013년 3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부과되고(EU, 2013) 2019년 종료재심에서 부과 기간이 연장된(EU, 2019)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가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우회덤핑에 해당한다. 2020년 11월 9일 접수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이후 태국에서 조립 공정을 거친 알루미늄 호일의 EU 역내 수입으로 인하여 중국, 태국, EU 간 교역 형태가 변하였으며, 중국산 부품의 가치가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총가치의 60%를 초과하였고, 조립 공정에서 추가된 가치는 제작비의 25%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12월 21일 조사를 개시하였다(EU, 2020).

집행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여 이 기간의 자료에 근거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의 교역 형태의 변화, 관행, 공정 또는 작업의 존재, 그리고 교역 형태의 변화에 반덤핑 관세의 부과 이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정당성이 불충분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보고기간을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여 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격 및/또는 수량 측면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를 훼손하였는지 조사하였다 (EU, 2020). 조사대상기간 중 중국에서 태국으로의 원자재 수출과 태국에서 EU로의 알루미늄 호일 수출 모두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중국에서 EU로의 알루미늄 호일 수출은 감소하여 교역 형태에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 형태의 변화에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의 회피 이외의 적절한 사유 또는 경제적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었다. 이에 제13조 제1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집행위원회는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동 항에서 규정하는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17년부터 급증하였고, 태국에서의 생산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인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태국산 제품의 원재료가 중국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산 원재료의 가치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총가치의 90%에 이르고, 태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에서 추가된 가치는 제작비의 18-24% 미만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태국산 수입으로 인하여 EU 생산자들이 적정가격보다 29%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는 수입이 해당 물품 총 수입의 14%에 이른다는 점을 확인하며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수출 가격이 2019년 종료재심에서 산정된 정상가격 미만이었기 때문에 덤핑도 존재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제13조 2항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U, 2020).

2) 조사 절차 개요

우회덤핑 조사는 집행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하거나 EU 회원국 또는 이해당사자가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신청하면 개시된다. 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당국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Vermulst, 2015). 우회덤핑 조사 절차는 예비 관정 절차가 없고 최종 관정만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덤핑 조사 절차와 동일하다. 즉, 우회덤핑 조사에서는 잠정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없고, 확정 관세만 부과된다. 그리고 우회덤핑 행위가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회덤핑 조사에서 산정된 덤핑마진이 원심 덤핑 조사에서 산정한 덤핑마진보다 작더라도 집행위원회는 반덤핑 관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원심대로 부과한다.

Ⅲ. 우회덤핑 제도의 WTO 합치성 분석

1. 덤핑 조사 절차 개관

반덤핑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덤핑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덤핑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모든 WTO 회원국들은 WTO 반덤핑 협정에 규정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제적인 요건과 덤핑 조사 시 준수되어야 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각국의 반덤핑 제도 및 덤핑 조사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사하다.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른 덤핑 조사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다.

조사 당국은 국내 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조사 당국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반덤핑 협정 제5.1조, 제.5.6조). 조사 신청자는 덤핑 수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물품과 그 물품을 생산하는 국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 국내 수입자, 해당 물품이 수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 수출가격, 수입량, 덤핑 수입되는 물품에

상응하는 국내 생산품, 해당 물품이 국내 생산품의 생산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하여 수입 물품의 덤핑 사실,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 그리고 덤핑과 국내 산업의 피해 간의 인과 관계 등에 대한 증거를 적시한 조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5.2조). 조사당국은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여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5.3조).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당국은 조사대상 기간 중 조사대상 물품이 덤핑 수입되었는지 여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덤핑 수입된 조사대상 상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 관계를 조사한다(제2조, 제3조). 미국의 경우, 상무부가 덤핑과 덤핑률을 조사하고 국제무역위원회가 피해 및 인과 관계를 조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에서 덤핑의 존부와 덤핑률을 조사하고 산업피해조사과에서 피해와 인과관계를 조사한다. 조사당국은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예비 판정이 있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잠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제7.1조),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최종 판정이 있으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 및 어느 정도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여 확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제9.1조). 이때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조사에서 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하다면 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9.1조). 덤핑 관세율이 확정된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를 통해 차액을 확립하기도 한다. 미국은 소급적 방식의 관세평가제도로 반덤핑 제도를 운용하는데, 덤핑조사에서 산정한 덤핑마진에 따라 정한 반덤핑 관세율만큼 현금예치 또는 담보 제공의 형태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매 1년 당해연도의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여 소급적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다소 독특한 방식이다. 반덤핑 관세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고, 부과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다(제11.1조, 제11.3조), 조사 당국은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사 당국의 직권으로 반덤핑 관세를 계속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제11.2조) 이를 보통 상황변화 재심이라고 한다. 또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하기 전, 조사 당국은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반덤핑 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이 검토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부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제11.3조) 이를 종료재심 또는 일몰재심이라고 한다.

2. WTO 반덤핑 협정과의 합치성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반덤핑 협정에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내용을 넣는 데에 WTO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 하였기 때문에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우회덤핑에 대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WTO 반덤핑 협정이 우회덤핑을 규율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회원국들이 국내법을 통하여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EU뿐 아니라 캐나다, 인도, 중국을 비롯한 약 35개 이상의 국가들이 현재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WTO 반덤핑 협정이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운용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가 WTO 반덤핑 협정의 요건에 합치되지 않으면 WTO협정을 준수하여야 되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에 본고는 미국과 EU의 제도를 중심으로 우회덤핑 제도가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물품

국내 산업이 조사 당국에 덤핑 조사를 신청할 때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덤핑 수

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물품과 그 물품을 생산하는 국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반덤핑 협정 제5.2조). 또한 조사 당국이 조사를 개시를 공고할 때에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명, 조사범위, 물리적인 특성, 용도와 제조공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국가와 공급자 역시 적시하여야 된다. 덤핑 조사는 이렇게 명확하게 범위가 정하여진 조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반덤핑 관세 역시 조사대상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렇게 조사 신청에 따른 조사 개시에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선적이나 생산 방법을 바꾸거나 물품을 사소하게 변경함으로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존 덤핑 조사에서 조사대상 물품에 포함되지 않았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A국이 B국의 X사, Y사, Z사가 생산하는 제품 P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완성품인 P가 아닌 P의 부품을 A국으로 수출하여 A국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한다면, A국으로 수출되는 부품은 원래 반덤핑 조사의 조사대상 물품인 "P"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만약 P의 부품을 제3국인 C국으로 수출하여 그곳에서 완성품인 P로 조립한 다음 A국으로 수출한다면 C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P는 조사대상 물품인 "B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P"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의 반덤핑 조사에서의 조사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았던 물품이 덤핑 수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별도의 반덤핑 조사를 통하여 덤핑과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반덤핑 관세의 부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약 우회덤핑되는 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조사를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반덤핑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즉, 전술한 예에서 A국은 B국의 X사, Y사, Z사

가 P제품을 덤핑 수출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의 P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다시 별도의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야 된다면 조사신청자는 덤핑 수입된 물품과 그 물품을 생산하는 국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 국내 수입자, 해당 물품이 수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 수출가격, 수입량, 덤핑 수입되는 물품에 상응하는 국내 생산품, 해당 물품이 국내 생산품의 생산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하여 수입 물품의 덤핑 사실,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 그리고 덤핑과 국내 산업의 피해 간의 인과 관계 등에 대한 증거를 적시한 조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새로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산업의 피해는 계속되어 새로운 조사 결과 우회 수입되는 물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더라도 이미 초래된 피해를 구제할 수는 없고, 국내 산업은 이미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조사 결과 우회 덤핑된 물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수출자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한 또 다른 우회 행위에 이미 착수한 다음일 수도 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무역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최종판정의결서에 기반하여 2013년 10월 중국산 활엽수 합판 중 두께가 6mm이상인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수출자들은 외피만 침엽수로 변경한 합판을 수출하였다. 기존의 반덤핑 관세는 활엽수 합판에 부과되고, 한국은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 합판 생산자들은 외피만 침엽수로 변경된 합판에 대하여 조사 개시를 요청하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새로운 조사 후 외피가 침엽수인 합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이 2016년 1월에 내려졌다. 만약 한국이 우회덤핑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면, 신청자들은 침엽수 합판의 덤핑과 이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서가 아닌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의 우회덤핑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었고, 조사당국 역시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수행할 수 있

었으며, 따라서 외피가 침엽수인 활엽수 합판이 한국 합판 산업에 초래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더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조사의 투명성과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를 담보하고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물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도록 하는 WTO 반덤핑 협정의 규정과 우회덤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충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 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여야 되고, 그 피해가 덤핑 수입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GATT 제VI.1조, 반덤핑 협정 제3조).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우회덤핑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초점이 우회덤핑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고, 실제로 조사의 요건과 기준이 반덤핑 조사에 비하여 완화되어있다. 피해 및 인과 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요건 역시 완화되어있다.

전술한 미국의 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덤핑의 존부와 덤핑마진 산정을 비롯한 덤핑에 대한 조사는 상무부가, 피해 및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는 ITC가 각각 수행하는데, 우회덤핑의 경우에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무부가 조사신청서와 기존의 덤핑조사 및 상무부와 ITC의 결정을 근거로 최종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우회덤핑 조사시 ITC는 피해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대신 상무부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 이러한 의사를 통보하면, 우회덤핑된 물품에 대하여 기존의 관세를 부과하였을 때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하여 상무부와 협의한다. 즉, 우회덤핑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ITC가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신청서에 적시된 우회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상무부 또는 ITC가 검토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조사를 갈음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반면, EU는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여 수입된 물품이 가격 또는 수량 측면에서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를 훼손하였다는 증거를 우회덤핑 판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 조사를 수행한다. 물론 국내 산업에 초래되는 피해의 신속한 구제라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피해 조사가 원래의 덤핑조사에서 이루어진 피해조사만큼 종합적이고 치밀하지는 못하겠지만 피해 조사를 요건으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니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3) 반덤핑 관세율

WTO 반덤핑 협정은 반덤핑 관세율이 덤핑 조사에서 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다면 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제9조 제1항). 즉,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 EU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 우회덤핑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우회하려고 하였던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회덤핑 조사에서 산정된 덤핑마진이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대로 부과한다. 그러나 우회덤핑 되는 물품의 덤핑마진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

하지만 우회덤핑 방지 제도가 기존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그 반덤핑 관세를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우회덤핑 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는 우회덤핑 조사에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때, 우회 수입되는 물품의 정상가격이 아닌 기존 덤핑 조사에서 산

정된 정상가격과 우회 수입되는 물품의 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전자보다 후자가 낮으면 덤핑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듯 우회덤핑 조사의 핵심은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데에 있으며,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행위를 통하여 회피하려고 하였던 반덤핑 관세를 그대로 부과함으로써 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취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반덤핑 협정의 규정에 맞춰 우회덤핑을 확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여 그 덤핑마진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회덤핑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반덤핑 관세의 소급 부과

WTO 반덤핑 협정은 잠정조치 및 반덤핑 관세는 이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규정하며 잠정조치 또는 반덤핑 관세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반덤핑 협정 제10.1조). 반면,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서는 우회덤핑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기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조사대상 물품을 확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1일 활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하여 8월 1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이 내리고 이날부터 부과가 시작되었고, 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피만 침엽수로 만든 활엽수 합판이 수입된다는 주장을 담은 우회덤핑 조사 신청이 2021년 8월 15일에 접수되어 2021년 9월 1일에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021년 12월 1일에 우회덤핑 판정과 함께 침엽수 외피의 활엽수 합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가정하면, 이 결정이 내려진 2021년 12월 1일이 아닌 조사 개시일인 2021년 9월 1일부터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가 기존의 활엽수 합판에서 침엽수 외피의 활엽수 합판으로 확대되어, 침엽수 외피의 활엽수 합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2020

년 8월 1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동 결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즉, 침엽수 외피의 활엽수 합판에 대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침엽수 외피의 활엽수 합판에 대한 2021년 12월 1일의 우회덤핑 판정 및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회덤핑 제도는 조사대상 물품,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조사, 반덤핑 관세율 및 반덤핑 관세의 소급 부과를 비롯한 구체적인 요소에서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캐나다, 인도를 비롯하여 약 35개 이상의 WTO 회원국들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현재 우회덤핑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목적은 기존에 덤핑조사를 통하여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우회행위가 확인되면 그 행위를 통하여 회피하려고 하였던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여 우회 행위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초래되는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동 제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즉, 우회덤핑 조사는 그 자체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아니고 기존 덤핑 조사의 연장선에 있는 조사로써 국내 산업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우회덤핑 조사는 조사 개시를 요청하는 신청서부터 덤핑률 산정, 국내 산업의 피해 판정 등 조사 절차 전반에 걸쳐 원래의 덤핑 조사에 비하여 요건과 기준이 반덤핑 조사에 비하여 완화된다. 만약 동일한 요건과 기준이 요구된다면, 조사 신청을 하는 국내 산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덤핑 및 산업 피해를 입증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회덤핑 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되고, 조사 당국 또한 종합적이며 세밀한 덤핑 및 산업 피해 조사를 수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원 조사와 거의 동일한 시간이 조사에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우회덤핑 조사는 새로운 반덤핑 조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고 우회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한다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여질 것이다. 따라서 WTO 반덤핑 협정이 규정하는 조사의 실제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목적을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WTO 반덤핑 협정에 불합치될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하여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한국을 비롯하여 아직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국가들도 동 제도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수출자들이 자국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수입국 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제하여야 된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20세기 초반부터 반덤핑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일부 수출자들이 물품의 선적이나 생산 방법을 바꾸거나, 물품 자체를 사소하게 변경함으로써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며 우회덤핑 행위를 통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반덤핑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우회덤핑 방지 제도가 1980년대부터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 35개 이상의 국가들이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서 볼 수 있듯, 이제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시정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반덤핑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우회덤핑은 규제되어야 한다. 우회덤핑 방지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조사를 통하여 우회덤핑 행위를 규율하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피

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제도 관련 규정과 실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우회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반면, 조사대상 물품의 확정, 우회덤핑 수입으로 초래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 반덤핑 관세율 및 반덤핑 관세의 소급 부과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우회덤핑 방지 제도와 WTO 반덤핑 협정과의 이러한 불합치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우회덤핑 방지 제도는 기존에 덤핑조사를 통하여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회 행위가 확인되면 그 행위를 통하여 회피하려고 하였던 관세를 그대로 부과함으로써 우회 행위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초래되는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동 제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즉, 우회덤핑 조사는 그 자체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아니고 기존 덤핑 조사의 연장선에 있는 조사로서 국내 산업 피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WTO 반덤핑 협정이 규정하는 모든 실제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제도의 목적을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아울러, 우회덤핑 제도의 반덤핑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회덤핑을 규율하여야 되는 실질적인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두루 감안하였을 때 아직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동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경제 구조가 수출주도형인지 수입대체형인지에 따라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수출 비중이 큰 산업 혹은 기업과 내수 비중이 큰 산업 또는 기업에 따라 산업 및 기업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도입이 모든 국가에 바람직하다고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수출주도

형 국가로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라도 상당수의 수출시장이 이미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의 도입 자체가 실(失)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우회덤핑 물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실제로 부과함에 있어서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 뿐 아니라 그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와 이를 원료로 하여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전방 산업 등 산업 전체에 미치는 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상당수 회원국이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WTO에서도 우회덤핑 규제 제도의 도입을 명

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DDA 협상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규범 협상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쟁점 중 우회덤핑만을 허용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WTO 반덤핑 위원회 결정 등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식을 통하여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1980년대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2011년 중단된 DDA 규범 분야 협상 당시 우회덤핑 방지 조항을 두는 데에 반대하였던 국가들도 통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선회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곽동철 (2017),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Trade Focus, 제22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정재호, 이민선, 양지영 (2014), “주요국의 우회덤핑 방지제도 비교연구”, 관세연구 1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Vermults, Edwin (2010), *EU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2nd ed.), London, UK: Sweet & Maxwell
- Vermults, Edwin (2015), "EU Anti-Circumvention Rules: Do They Beat the Alternative?", European Union Institute Working Paper: Robert Schuman Centre for Advanced Studies Global Governance Programme 180. Available from https://cadmus.eui.eu/bitstream/handle/1814/36657/RSCAS_2015_57.pdf?sequence=1
- EC (2006), *Council Regulation (EC) No 1472/2006 of 5 October 2006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leather upper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Vietnam*, OJ L275/1, 6.10.2006 (6 October 2006)
- EC (2008), *Council Regulation (EC) No 388/2008 of 28 April 2008 extending the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by Regulation (EC) 1472/2006 on imports of certain footwear with leather upper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imports of the same products consigned from the Macao SAR, whether declared as originating in the Macao SAR or not*, OJ L1771/1, 1.5.2008 (1 May 2008)
- EU (2011),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31/2011 of 14 December 2011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iv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seamless pipes and tube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J L336/6, 20.12.2011 (20 December 2011).

- EU (2013),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17/2013 of 11 March 2013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and collecting definitely the provisional duty imposed on imports of certain aluminum foils in roll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J L69/11, 13.3.2013 (13 March 2013)
- EU (2017a),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72 of 16 February 2017 initiating an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possible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by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31/2011 of 14 December 2011 on imports of certain seamless pipes and tube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imports consigned from India, whether declared as originating in India or not, and making such imports subject to registration*, OJ L40/64, 17.2.2017 (17 February 2017)
- EU (2017b),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093 of 15 November 2017 terminating the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possible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by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31/2011 of 14 December 2011 on imports of certain seamless pipes and tubes of stainless steel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imports consigned from India, whether declared as originating in India or not, and terminating the registration of such imports imposed by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272*, OJ L299/1, 16.11.2017 (16 November 2017)
- EU (2019),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915 of June 2019 imposing a definitive anti-dumping duty on imports of certain aluminum foils in roll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llowing an expiry review under Article 11(2) of Regulation (EU) 2016/10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146/63, 5.6.2019 (5 June 2019)
- EU (202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161 of 18 December 2020 initiating an investigation concerning the possible circumvention of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by Implementing Regulation (EU) on imports of certain aluminum foils in roll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y imports of certain aluminum foils in rolls consigned from Thailand, whether declared as originating in Thailand or not, and making such imports subject to registration*, OJ L431/42, 21.12.2020 (21 December 2020).
- EU (2021).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021/1475 of 14 September 2021 extending the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imposed by R2019/915 of June 2019 on imports of certain aluminum foils in rolls originat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imports of certain aluminum foils in rolls consigned from Thailand, whether declared as originating in the Thailand or not*, OJ L325/24, 15.9.2021 (15 September 2021)
- GATT Secretariat (1992), *Draft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ATT Doc No MTN.TNC/W/FA, 20 December 1991.
- USDOC (1984), *Antidumping Duty Order on Color Television Receiv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49 Federal Register 18336 (April 30, 1984).
- USDOC (1996a), *Color Television Receivers From Kore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n Antidumping Duty Order*, 61 Federal Register 1339 (January 19, 1996).
- USDOC (1996b), *Notice of Antidumping Duty Order and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Certain Pasta From Italy*, 61 Federal Register 30287 (June 14, 1996)
- USDOC (1996c), *Notice of Antidumping Duty Order and Amended Final Determination of Sales at Less Than Fair Value: Certain Pasta From Italy*, 61 Federal Register 38547 (July 24, 1996)

- USDOC (1997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y on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Pasta From Italy*, 62 Federal Register 65673 (December 15, 1997)
- USDOC (1997b), *Color Television Receivers From Korea; Preliminary Results of Changed Circumstances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62 Federal Register 68256 (December 31, 1997)
- USDOC (1998a),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Pasta From Italy: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63 Federal Register 18364 (April 15, 1998)
- USDOC (1998b), *Anti-Circumvention Inquiry of Antidumping Duty Order on Certain Pasta From Italy: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Circumvention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63 Federal Register 54672 (October 13, 1998)
- USDOC (2016a),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Jap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tidumping Duty Orders*, 81 Federal Register 45955 (July 14, 2016)
- USDOC (2016b),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iti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1 Federal Register 81057 (November 17, 2016)
- USDOC (2017),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2 Federal Register 58178 (December 11, 2017)
- USDOC (2018), *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 of Anti-Circumvention Inquiries on the 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Orders*, 83 Federal Register 23891 (May 23, 2018)